

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 및 제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학교급식 대상 등) ① 법 제4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는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원아수(「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」 제5조의2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된 현원 원아수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50명 미만인 유치원을 말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아수 5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.

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명칭과 주소를 매년 1월말까지 공시하여야 한다.

제8조의2(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 배치기준 등)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에는 영양교사 1명을 둔다.
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원아수 200명 미만인 유치원은 2개 이내의 유치원에 순회 또는 공동으로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 중 원아수 100명

미만의 유치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전담직원(「국민영양관리법」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한다)을 둘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는 유치원에는 법 제7조에 따른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본다.

1.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관리
2. 법 제13조에 따른 식생활 지도
3. 법 제14조에 따른 영양상담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u><신 설></u>		제2조의2(학교급식 대상 등) ①		
		<u>법 제4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는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원아수(「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」 제5조의2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된 현원 원아수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50명 미만인 유치원을 말한다.</u>		
<u><신 설></u>		<u>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아수 5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.</u>		
		<u>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명칭과 주소를 매년 1월말까지 공시하여야 한다.</u>		
		제8조의2(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 배치기준 등) ①		
		<u>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은 다</u>		

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에는 영양교사 1명을 둔다.

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원아수 200명 미만인 유치원은 2개 이내의 유치원에 순회 또는 공동으로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 중 원아수 100명 미만의 유치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전담직원(「국민영양관리법」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한다)을 둘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는 유치원에는 법 제7조에 따른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본다.

1.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관리

2. 법 제13조에 따른 식생활 지도

3. 법 제14조에 따른 영양상담